「구미시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원섭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영태 의원 외 12인

3. 제안이유

○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농촌공간 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안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～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(안 제3조～제5조)

다.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
라. 자문위원회,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～제9조)

5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6조, 제33조, 제40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시 관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,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4조, 제5조에서는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구미시 농촌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.

- 안 제6조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, 일자리 활성화 등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였음.

-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의 선정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되,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위법률에 따른 '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'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 업무 중복을 방지하였음.

-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농촌 지원사업 간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, 기존 농촌 개발 사업과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는 한편, 농촌이 삶·일터·쉼터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.